교원 연수에 관한 규정

제정 1994. 4. 14. 제11차 개정 2005. 8. 30.

- 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(이하"본교"라 한다) 교원의 국내·외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학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① 해외연수라 함은 학문 연찬을 위한 외국에서의 학술연구, 학위과정 이수, 학사제도 시찰 등을 말한다.
 - ② 해외출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총장의 출장명령을 받아 해외파견하는 것을 말한다.
 - 1. 학교발전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시찰 및 자료수집
 - 2. 국비 연구교수 파견
 - 3.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
 - 4. 기타 총장의 명에 의한 연구 또는 시찰
- **제3조(연수구분)** ① 해외연수는 연수기간에 따라 단기연수와 장기연수로 구분한다. 방학중 또는 학기 중 60일 이하의 기간을 요하는 연수를 단기연수라 하고 그 이상의 기간을 요하는 연수를 장기연수라 한다.
 - ② 학위과정 이수 또는 학술연구 등 1년을 초과하는 장기 연수 시에는 휴직 처리한다.
- **제4조(자격)** ① 이 규정에 의한 단기연수는 본교에서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.
 - ② 이 규정에 의한 장기연수 교원은 본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교육인적자원부 및 공공기관의 해외파견 연수는 본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해당기관의 추천기준에 의한다.

(조 개정 2003.8.29)

- **제5조(기간 및 회수제한)** ① 장기연수의 기간은 1회에 6월간으로 한다. 다만, 본인의 원에 의하여 1년까지로 연장할 수 있으며, 학위취득의 경우 총장이 2년까지 연장을 허가 할 수 있다.
 - ② 본교 재직기간 중 해외연수의 허가회수는 4회까지로 하며, 통산하여 5학기를 초과 할 수 없다.
 - ③ 삭제 (2000.6.15)
 - ④ 연구년 종료 후 연구년 기간의 3배 이상을 근무하지 않은 교원은 연수를 신청할 수 없다. (실설 2003.8.29)

제6조(구비서류) ① 삭제 (1997.4.24)

- ② 삭제 (1994.8.22)
- ③ 삭제 (1997.4.24)
- ④ 해외 연수를 희망하는 교원은 신청 시기 내에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 - 1. 해외연수(파견)신청서 (별지 제1호 서식) 1통
 - 2. 초청장 (외국기관 또는 연구단체 발행) 1통
 - 3. 해외연수(파견)계획서 (별지 제2호 서식) 1통
 - 4. 해외연수(파견) 경비계산서 1통
 - 5. 소속 대학장 의견서 1부
- 6. 연구실적목록 1부

제7조(연수자 수) ① 삭제 (1997.4.24)

- ② 삭제 (1997.4.24)
- ③ 연수교원의 수는 소속 학과 교원의 1/4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하며, 4명 미만의학과는 연수교원의 수를 1명으로 한다. 다만, 학과 통폐합에 따른 전공학과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속학과 재적교원 수의 1/2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. (개정 2005.8.30)
- 제8조(연수신청) ① 제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교원 중 해외연수를 희망하는 사람은 연수 예정 기

간이 후반기(9.1 - 익년 8.30)의 경우 4월30일 이전, 전반기(3.1 - 익년 2.28)의 경우 10월 31일 이전에 제6조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국비파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

② 해외연수는 개시일을 학기초로 하고 종료일을 학기말로 하여 허가하며 학기도중의 개시와 종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

제9조(심의) ① 연수교원의 자격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학술심의위원회에서 한다.

- ② 삭제 (1999.5.20)
- ③ 삭제 (1999.5.20)
- ④ 삭제 (1999.5.20)
- ⑤ 연수교원의 자격심사 시 다음 각 호를 반드시 참작하여 심의하여야 한다.
- 1. 해외연수신청 교원의 자격 및 요건
- 2. 파견대상국 및 연구기관의 타당성
- 3. 재직년한
- 4. 소속대학장의 의견
- 5. 연구실적
- 6. 연구계획
- 7. 외국어 구사능력
- ⑥ 삭제 (1999.5.20)
- **제10조 (연수자 선정)** ① 총장은 학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참작하여 당해년도 연수 교원을 선정한다. 다만, 교육인적자원부, 한국연구재단, 한국교육대학교육협의회, 한국과학재단 등의 국비지원에 의한 연수는 학술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하지 않고 보고만 한다.
 - ② 연수자를 총장이 선정 또는 추천하여야 할 경우, 연수의 목적에 따른 명확한 기준이나 연수기관(또는 비용부담기관)의 명시된 기준이 없거나 또는 기준에 부합하는 교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점수로 환산하여 선정 또는 추천한다.
 - 1. 본교에서의 재직기간이 길수록 우선한다.
 - 2. 과거 6월 이상의 해외연수의 회수가 적을수록 우선한다.
 - 3. 과거 5년간 단과대학별 국외파견자 수가 적을수록 우선한다. 이때 파견자 수가 같으면 파견된 년도가 오래 될수록 우선한다.
 - 4. 과거 5년간 학과별 국외파견자 수가 적을수록 우선한다.
 - 5. 학교발전의 공헌도가 높을수록 우선한다.
- 제11조(처우) 장기해외연수 교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교직원보수규정 제42조에 의한다.

제12조(임무) ① 삭제 (1997.4.24)

- ② 삭제 (1997.4.24)
- ③ 본 규정에 의하여 연수를 받은 사람은 연수종료 후 연수기간의 3배 이상을 본교에 근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연수기간 동안 지급 된 보수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
- ④ 해외연수교원이 출국할 때에는 출국 전에 총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, 귀국 하였을 때에는 1월 이내에 연수결과보고서(<u>별지 제3호 서식</u>)를, 1년 이내에 연구실적물 발표보고서(<u>별지 제 4호 서식</u>)를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개발표회를 가져야 한다. 총장은 이를 위반한 교원에 대하여는 승진을 유보시킬 수 있다.
- 제13조(복귀) ① 연수기간이 종료하면 즉시 복귀하여 근무하여야 한다
 - ② 연수기간이 종료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강의 담당교원의 현저한 부족 등 부득이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총장은 그 교원의 복귀를 명할 수 있다
- 제14조(복귀불응자에 대한 조치) 전조에 따라 복귀하지 않은 교원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총장은 복귀하여야 할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를 요청 할 수 있다
- 제15조(국내연수) 국내파견 교류 교수 등 국내연수의 경우도 국외연수에 준해서 시행한다
- **제16조(세부사항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규정은 1994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1994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1994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1996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

부칙

- (1)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
- (2)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전에 연수중인 교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

부칙

이 규정은 1997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

부칙

이 규정은 1997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

부칙

이 규정은 1998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

부칙

이 규정은 199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

부칙

이 규정은 200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

부칙

이 규정은 200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

부칙 (기획예산과-915, 2005.8.30)

이 규정은 2005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

별지 제1호 서식

해외연수(파견)신청서

소 속	직 급
성 명	생 년 월 일
근무 년수	주민등록번호

위 본인은 아래와 같이 해외연수(파견)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1. 연수목적 :	
-----------	--

2. 연수기관 :

3. 연수기간 :

4. 초청자 :

5. 연수지 국명 :

6. 경비:

7. 외국어 구사 능력 :

년 월 일

위 신청인 : (인)

소속부서장 : (인)

상지대학교 총장 귀하

5-0-5, 교원연수에관한규정					
별지 제2호 서식					
해외연수(피	ት 견)겨	ᅨ획서			
소 속 :					
소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				
위 본인의 해외연수(파견) 계획은 아래	와 같습	·니다			
1. 해외연수의 동기 및 경위					
2. 해외연수중 수행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					
3. 경비예산					
4. 기타 참고사항					
	년	월	일		
					,
				위 본인 :	(인)

상지대학교 총장 귀하

별지 제3호 서식				
연수결과보고서				
1. 연수기관				
2. 연수목적				
3. 연수기간				
4. 연수내용				
	년 월 일			
	소 속 : 직 급 : 성 명 (인)			
상지대학교 총장 귀하				

별지 제4호 서식

연구실적물 발표보고서

소 속		직 급		성 명		(인)		
연 구 과제명								
1. 발표논든	구명 (또는 저서명)	공동연구자명		게 재	발행일			
내용요약								
붙 임 : 별쇄본 1부.								
2. 발표논문명 (또는 저서명)		공동연구자명		게 재 지 명		발행일		
내용요약								
붙 임 : 별쇄본 1부.								
3. 발표논등	발표논문명 (또는 저서명)		공동연구자명		게 재 지 명			
내용요약								
붙 임 : 별쇄본 1부.								
<u>상지대학교 총장 귀하</u>								